



제439회국회(정기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이버폭력 촬영물등의 삭제 등 요청 의무화 및
피해학생 가족 대상 심리 지원 신설 〉
■ 이상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664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문근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사이버폭력 촬영물등의 삭제 등 요청 의무화	3
2. 피해학생 가족 대상 심리 지원 신설	14
3. 개정안 부칙	1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상회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6. 7. 1.

3. 회부연월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경우 피해학생 등의 요청에 따라 국가가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은 피해학생 본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신속한 삭제 없이는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피해학생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은 사이버폭력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또는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제4항 및 제16조의5 신설).

Ⅲ. 검토의견

1. 사이버폭력 촬영물등의 삭제 등 요청 의무화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사이버폭력 관련 촬영물등의 삭제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의 관리·운영자에게 삭제 등 조치를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사이버폭력 관련 콘텐츠를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 요청을 받고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게시</u>

④ ~ ⑥ (생략)	<u>관의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촬영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u>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	--

나. 검토의견

- 최근 교내 사이버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으로 사이버폭력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의 피해 유형별 비중에서도 사이버폭력 비중이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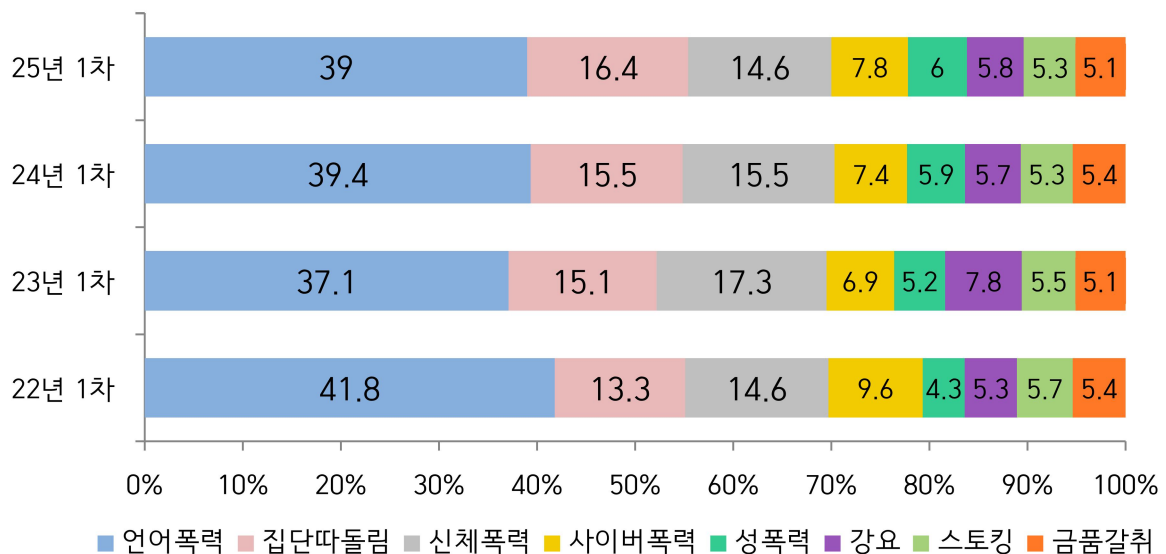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폭력 현황]

(단위: 건, 기준: '26. 3.)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초	290	467	879	858	1,027	1,134
중	822	1,261	2,040	1,922	2,293	2,365
고	576	746	973	871	1,217	1,130
기타	32	28	21	34	51	36
총계	1,720	2,502	3,913	3,685	4,588	4,665

자료: 교육부

【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비중(%) 】



자료: 교육부, 「2025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2025. 9. 16.)

□ **현행법 제16조의4 및 시행령 제18조의3¹⁾**에서는 이러한 사이버폭력²⁾에 해당하는 콘텐츠 유포에 대하여, 사이버폭력 콘텐츠 삭제 지원 제도를 아래와 같이 두고 있고, 교육부장관은 지원 신청에 따라 상담, 피해 정보 수집, 관계 기관·단체 협조 요청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①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지원요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촬영물등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2. 촬영물등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의 수집
3. 촬영물등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
4. 그 밖에 촬영물등 삭제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략)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원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생략)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생략)

[사이버폭력 콘텐츠 삭제 지원 제도 개요]

구분	내용	비고
신청 대상	①피해학생, ②보호자, ③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④교육감 또는 교육장(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한정)	
지원 내용	① 상담, ②피해 정보의 수집, ③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 ④관계 기관·단체 협조 요청 등	
비용 부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 실제 사이버폭력 콘텐츠의 삭제 등에 대한 관계 기관·단체 협조 요청 절차의 경우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면, 요청을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등 시정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을 하는 절차로 진행됨³⁾.

- 참고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답변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요구한 사례는 2024년에 18건이 있음.

3)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가 유통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정지·제한이라는 두 가지 단계적 내지 중첩적 규제제도가 정립되게 되었다(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 사이버폭력 콘텐츠 삭제 등 협조 요청 절차 흐름도 >



자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료 바탕으로 편집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및 후속 조치 현황 >

구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마약	도박	불법금융	자살유발 정보
2023	전체심의	223	30,503	55,623	7,353	477
	처리기간	48일	49일	88일	29일	56일
	시정요구 결정 비율	73.9%	100%	99.98%	100%	97.69%
	처리거부 등 명령	-	-	-	-	-
2024	전체심의	961	31,439	85,516	10,637	486
	처리기간	67일	57일	149일	79일	99일
	시정요구 결정 비율	72.1%	99.98%	99.98%	99.94%	91.77%
	처리거부 등 명령	-	-	-	-	-
2025	전체심의	986	18,208	53,569	6,082	216
	처리기간	68일	24일	89일	89일	38일
	시정요구 결정 비율	92.7%	99.98%	99.98%	100%	99.54%
	처리거부 등 명령	-	-	-	-	-

* 자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인터넷 불법정보의 현행 분류 체계상 사이버폭력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있음

☐ 그런데, 사이버폭력 콘텐츠의 경우 정보통신망 유포 후 급속히 확산된다는 특성상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부장관의 권한 및 책임이 차단 등 조치 요청에 관한 직접 권한 부재, 관계 기관·단체 협조 요청의 임의성 등 소극적 수준에 머물고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또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사이버폭력 콘텐츠를 신속히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이버폭력 콘텐츠의 삭제 등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함과 동시에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 대해서도 이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개정안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삭제 등 요청과 관련하여 벌칙 등 실효성 확보수단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교육부장관의 요청은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지도에 해당함.

따라서, 교육부장관의 삭제 등 요청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도 동일한 사항을 요청하여 조만간에 시정요구가 내려질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의 관리·운영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협조를 여하히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것이 관건이라고 보임.

둘째, 교육부장관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삭제 등 요청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규제 체계 분산으로 인한 혼란 및 이중 규제 우려, 부처 간 권한 충돌 등 측면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현행 인터넷 규제 체계는 행정권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민간기구⁴⁾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를 비롯한 정보통신에서의 내용 관련 심의를 담당하고, 불법정보에 대한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등 각종 처분은 행정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이원적인 형태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음⁵⁾.

4)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기관의 성격을 국가행정기관으로 보고 있음.

【웹사이트 차단 위헌확인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사건, 2019헌마158등 (2019헌마158, 2019헌마232), 2023. 10. 26.】

피청구인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통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제18조 제1항), 피청구인의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8조 제3항, 제7항), 별도의 기금 이외에 국고에서 피청구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8조). 피청구인은 방통위법 제21조 제4호에서 정한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외에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등을 할 수 있고, 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하며,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 등을 결정할 수 있다**(제21조, 제24조, 제25조). 이와 같이 피청구인의 설립, 운영, 직무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임을 인정할 수 있다.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3.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

제22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제25조(심의규정의 제정·공표) 심의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한다.

2. 제22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6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5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행 체계 하에서 사이버폭력 콘텐츠의 삭제 등 의무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불이행 시 내려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을 통하여 강제되는바, 교육부장관의 삭제 등 요청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①불법정보 규제 체계가 분산되어 규제 대상인 사업자들 입장에서 혼란 및 이중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②행정권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간기구로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권고 또는 의견제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정보 및 같은 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 ② 법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4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참고로,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저작권법」 6) 등에서 예외적으로 삭제 등 요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⁷⁾.

6)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또는 후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 또는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후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한 정보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해당 정보의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마. 제82조의4제5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82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만,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항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의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촬영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촬영물등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피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의5(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이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살유발정보 및 작성자에 대한 식별

2. 자살유발정보 유통 차단·삭제 요청

3. 자살유발정보와 관련한 긴급구조 신고 또는 유통자에 대한 신고 등 사후관리

4.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해당 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는 제1호, 제2호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셋째, 개정안 제16조의4제4항의 신설에 따라 기존 제16조의4제4항부터 제6항까지가 조문이 이동되었는데,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⁸⁾에 해당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정비하기 위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함.

[개정안 관련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교육부 - 온라인 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채증, 위법성 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기관의 본래 직무와 맞지 않으며 전문인력 및 기술적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개정안에 따른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며,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의 권한 중복 등의 우려를 표명함.
○ 시·도교육청(서울,부산,강원,세종) - 불법 유포물의 존재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식별하고 차단을 요청하는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전담해야할 영역이며, 교육부장관에게 삭제 요청 의무 부과시 신속 구제라는 입법 의도와는 달리 조사 주체의 모호성, 증거 확인의 한계 등으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음. - 다만, 경기는 다수 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며 다만 구체적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7) 현행법 체계 상 방심위 업무와 중복 및 규제 기관 다양화로 인한 혼선이 우려됨. 개정안과 같이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가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이트의 차단, 게시물의 삭제 등을 직접 요청할 경우, 방통위 설치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방심위의 업무와 중복될 우려가 있음. 또한, 규제기관 분산이 초래되어 사업자 등에게 혼선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규제주체에 따라 동일정보에 대한 이중규제 문제 야기 우려가 있음(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107843, 임기만료 폐기) 검토보고서 p. 20).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제5항에 따른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피해학생 가족 대상 심리 지원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피해학생의 가족에 대해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6조의5(피해학생 가족의 심리상담·치료 지원) ① 국가는 피해학생의 학교폭력사건 또는 그 처리과정에서 심리적 피해를 입은 가족에 대하여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치료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치료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국가가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치료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가족의 범위와 심리상담·치료 지원의 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6조⁹⁾에 따르면,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학교장의 직권으로 심리 상담·조언·치료에 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학교폭력은 피해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피해학생 가족에 대한 심리 지원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 이에 개정안은 피해학생 가족에 대해서도 심리 지원을 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학교폭력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학교폭력 피해가능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 학교폭력 처리 절차의 직접 당사자는 피해학생 및 그 보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호자로 규정되어 있는바,

학교폭력 처리 절차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가족의 경우에도 학교 폭력에 따른 피해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가족의 어느 범위까지 피해가 미치는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 일부 법률에서 피해자의 가족까지 심리 지원을 하고 있음.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 지원 입법례]

구분	입법례	비고
가족 범위 규정	학교안전사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민법상 가족 범위 ¹⁰⁾ 와 유사)
	교육시설안전사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가족 범위 미규정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장애인학대 (「장애인복지법」)	
	노인학대 (「노인복지법」)	

10)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둘째, 피해학생 가족에 대한 심리 지원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여부에 대해 지원의 정당성 및 가해학생의 수용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따른 피해학생 가족 심리 지원은 국가가 가해학생 측을 대신하여 선지원하고, 이후 가해학생 측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인바,

①가해학생 측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라는 불이익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②피해학생에 대한 심리 지원에 대해서도 원칙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지원을 할 경우 가해학생 측의 수용성이 떨어지고, 나아가 지원의 정당성에 대한 분쟁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셋째, 가해학생을 심리지원의 비용부담 주체로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가해학생의 경제적 능력 및 심리 지원 비용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제16조에 따른 보호조치의 경우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에 한해, 제16조의4에 따른 사이버폭력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경우에는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모두를 비용부담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¹¹⁾.

11)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넷째, 법률 내 용어의 통일성 제고 및 법률용어의 순화 측면에서 개정안 제16조의5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상권”을 “상환청구권”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현행법 모든 규정에서 “상환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 제16조제6항¹²⁾의 경우에는 과거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¹³⁾」(법률 제17954호, 2021년 3월 23일 시행)에 따라 “구상권”이라는 용어에서 “상환청구권”으로 개정된 사례임.

[개정안 관련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교육부

-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학생을 직접적인 규율 및 보호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본 법률이 지향하는 목적의 범위를 일탈할 우려가 있는 점, 피해학생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치료비까지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할 경우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있어서의 관계회복, 교육적 계도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밝혔음.
- 특히,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심의, 쟁송으로 가는 사법화 경향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됨

○ 시·도교육청(서울,부산,강원,세종,경기)

- 피해학생 가족 구성원이 겪는 심리적 타격은 학교폭력 사건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사법적 손해배상 소송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명하였음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④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3) 국회사무처·법제처 및 국립국어원이 협력하여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여 제시한 법률용어 정비 시안을 반영한 법률임.

3.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안 부칙).

개 정 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개정안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조치 요청 의무의 경우 삭제 지원 요청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른 의무가 언제부터 요청된 건까지 적용되는지 그 시점에 대해 불필요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용례를 두어 그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 6788-5187